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상규
건명	장광일 소유물건(2025타경512326)
감정서번호	가람 0425-09-20103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가람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KAARAM APPRAISAL CO., LTD.
TEL:032)547-1551 FAX:032)547-1550

(구분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서윤석

(인)

(주)가람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지사장 권명자

(인)

감정평가액	일억사백만원정(₩104,000,000.-)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상규	감정평가목적	경매	
채무자	-	제출처	인천지방법원 경매8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장광일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09.22	2025.09.22	2025.09.22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원/㎡)	금액(원)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104,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104,000,000

심사자는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오은진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소재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대상 물건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7-16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698-7)		
건물명 및 층·호수	아주하이빌 제101동 제4층 제401호		
건물 개황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지하/지상)
	189.2	516.32	-1 / 4
	주구조	주용도	사용승인일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다세대주택	2001.10.10

기호	동 / 층 / 호수	이용상황	전유면적 (㎡)	공용면적 (㎡)	합 계 (㎡)	대지권 면적(㎡)
1	101 / 4 / 401	다세대주택	39.73	4.548	44.278	16.22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09월 22일임.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대상은 2025년 09월 22일 현장을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의 조건

가.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나. 감정평가의 조건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가. 본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으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부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호별위치 표시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나. 구분소유물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법원의 요청(평가목적)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평세표’에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및 감정평가 방법

가.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나.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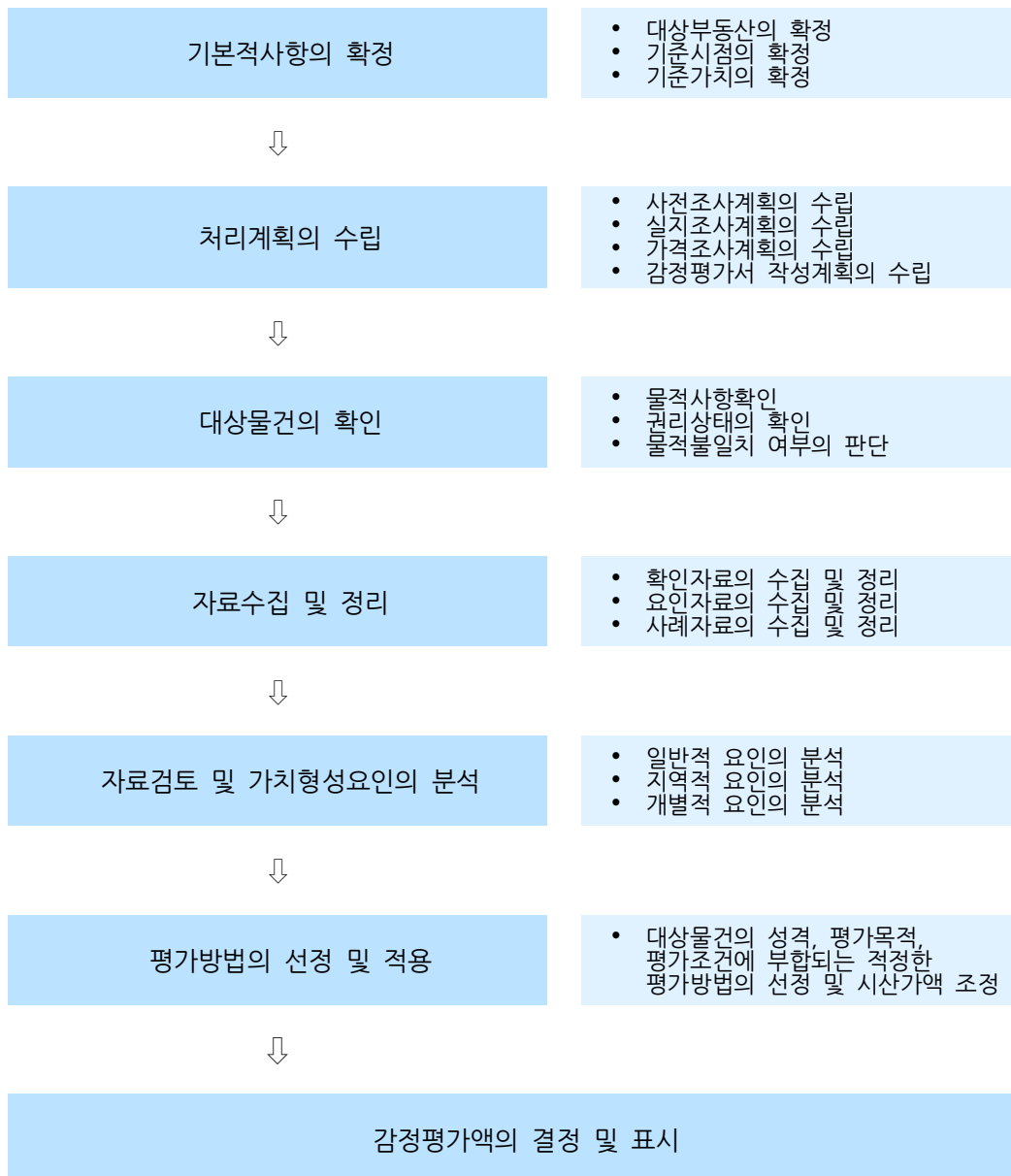
다. 본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 1)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토지, 건물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관행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거 인근지역 내 유사한 부동산의 일반적인 거래사례와 위치, 입지조건, 부근상황 및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상태, 설비상태, 층별 . 향별 . 위치별 효용성 등 제반 가격 형성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대지권인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대상물건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성이 높은 구분건물로서, 대상물건의 특성상 원가법이나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바,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감정평가전례 등 참고가격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한 후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2) 본건의 면적, 구조 등은 귀 제시목록 및 집합건축물대장 등의 공부를 기준하였으며, 위치확인 건축물 현황도 및 현장조사에 의거하여 확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감정평가 절차

본 감정평가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를 근거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작성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

1.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층수	전유면적 기준 가격수준(원/㎡)	비고
본건 인근	다세대주택	4층	약 2,500,000 ~ 2,700,000 내외	본건 유사

2. 인근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 / 층 / 호수	이용 상황	전유면적 (㎡)	거래가격 (원)	전유면적 기준 단가(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비고
#1	공촌동 313- * 신동아빌라 2 / 4 / 40*	다세대 주택	43.77	115,000,000	2,630,000	2025.05.14 2001.07.11	-
#2	공촌동 313- * - / 1 / 10*	다세대 주택	59.77	145,000,000	2,430,000	2025.04.28 2001.07.11	-

※ 사례의 거래가격 및 거래시점은 해당자료의 출처를 기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인근 평가전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 / 층 / 호수	이용 상황	전유면적 (㎡)	감정평가액 (원)	전유면적 기준 단가(원/㎡)	기준시점 평가목적	사용승인일
#ㄱ	공촌동 311- * 동원빌라 나 / 1 / 10*	다세대 주택	43.58	106,000,000	2,430,000	2025.06.27 법원경매	1994.07.06
#ㄴ	공촌동 312-2* * 동원주택 - / 3 / 30*	다세대 주택	39.3	105,000,000	2,670,000	2025.03.17 법원경매	2000.05.30
#ㄷ	공촌동 31* * 주천그린빌라 - / 2 / 20*	다세대 주택	43.55	118,000,000	2,710,000	2025.03.15 법원경매	1998.11.18
#ㄹ	공촌동 312-1* * 진아트빌 - / 4 / 40*	다세대 주택	39.23	103,000,000	2,630,000	2024.09.13 법원경매	2002.03.22
#ㅁ	공촌동 307-1* * 아주하이빌 101 / 1 / 10*	다세대 주택	50.3	129,000,000	2,560,000	2024.02.06 법원경매	2001.10.1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

1. 비교사례의 선정

가. 비교사례의 선정 및 그 사유

상기 참고자료 중 대상과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위치적 유사성이 있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서 물적 유사성이 있어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로서,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 가능한 사례인 다음의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본건 기호	비교사례 선정
1	#1

나. 선정된 비교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명 층 / 호수	이용 상황	전유면적 (㎡)	대지권 면적(㎡)	거래가격 (원)	전유면적 기준 단가(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1	공촌동 313- 신동아빌라 2 / 4 / 40*	다세대 주택	43.77	22.28	115,000,000	2,630,000	2025.05.14 2001.07.11

※ 거래사례의 거래가격 및 거래시점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하였음.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함.

결정의견	본 비교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사례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음.
사정보정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점수정

■본건 기호 1 / 사례 기호 #1

본건은 구분건물(다세대주택)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의 자가변동률, 한국은행에서 조사·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는 본건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미약한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중 인천광역시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였으며, 기준시점 현재 지수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 최종발표지수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하였음.

(출처 : 한국부동산원 조사발표)

구 분	적 용 치	비 고
사례의 매매시점 당시 매매가격지수	99.9	2025.04
기준시점 당시 매매가격지수	99.5	2025.08
시점수정치	0.99600	99.5/99.9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가치형성요인 비교

■ 구분건물 [본건 기호 1 / 사례 기호 #1]

가치형성요인		검토의견	격차율
항 목	세 부 항 목		
외 부 요 인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유사함.	1.00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가로외 폭, 구조 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 풍치 . 경관 등)		
건 물 요 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유사함.	1.00
	단지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 중형 .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개 별 요 인	층별 효용	유사함.	1.00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 타 요 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사함.	1.00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text{시산가액} = \text{사례가격}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가치형성요인비교}$$

기호	비교 사례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정단가 (원/㎡)	면적 (㎡)	산정가액 (원)	시산가액 (원)
1	#1	2,630,000	1.000	0.99600	1.000	2,619,480	39.73	104,071,940	104,000,000
합 계							39.73	-	104,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I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을 상기 “감정평가액결정에 참고한 자료”(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거래동향, 감정평가전례) 등과 비교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본건의 평가목적, 최근의 부동산 가격동향, 장래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액의 결정

기호	동 / 층 / 호수	전유면적(㎡)	감정평가액(원)	비고
1	101 / 4 / 401	39.73	104,000,000	비준가액
합계		39.73	104,000,000	-

결정된 감정평가액	104,000,000원
-----------	--------------

구분건물 개별요인 분석표-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7-16
건 물 명 칭 및 동 · 호 수	아주하이빌 제101동 제4층 제401호
지 리 적 위 치 및 주 위 환 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소재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무난함.
교 통 상 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 지하철 '아시아드경기장역(인천2호선)'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접 면 도로 상 황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해있으며, 포장상태 및 계통성 등은 보통임.
토 지 이 용 계 획 및 공 법 상 제 한 사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관리계획 입안중인 지역(연희3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

구분건물 개별요인 분석표-2

건물의 구조 및 마감재 등	구조 및 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101동 4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붙임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임.						
이 용 상 황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관 리 상 태	① 양호 ② 보통 ③ 불량			사 용 승 인 일		2001.10.10	
부대설비 등	급배수 위생설비	난방 설비	냉방 설비	소화전 설비	화재탐지 설비	승강기 설비	주차장
	○	○	-	○	○	-	○
공부와의 차이 및 기타	없음.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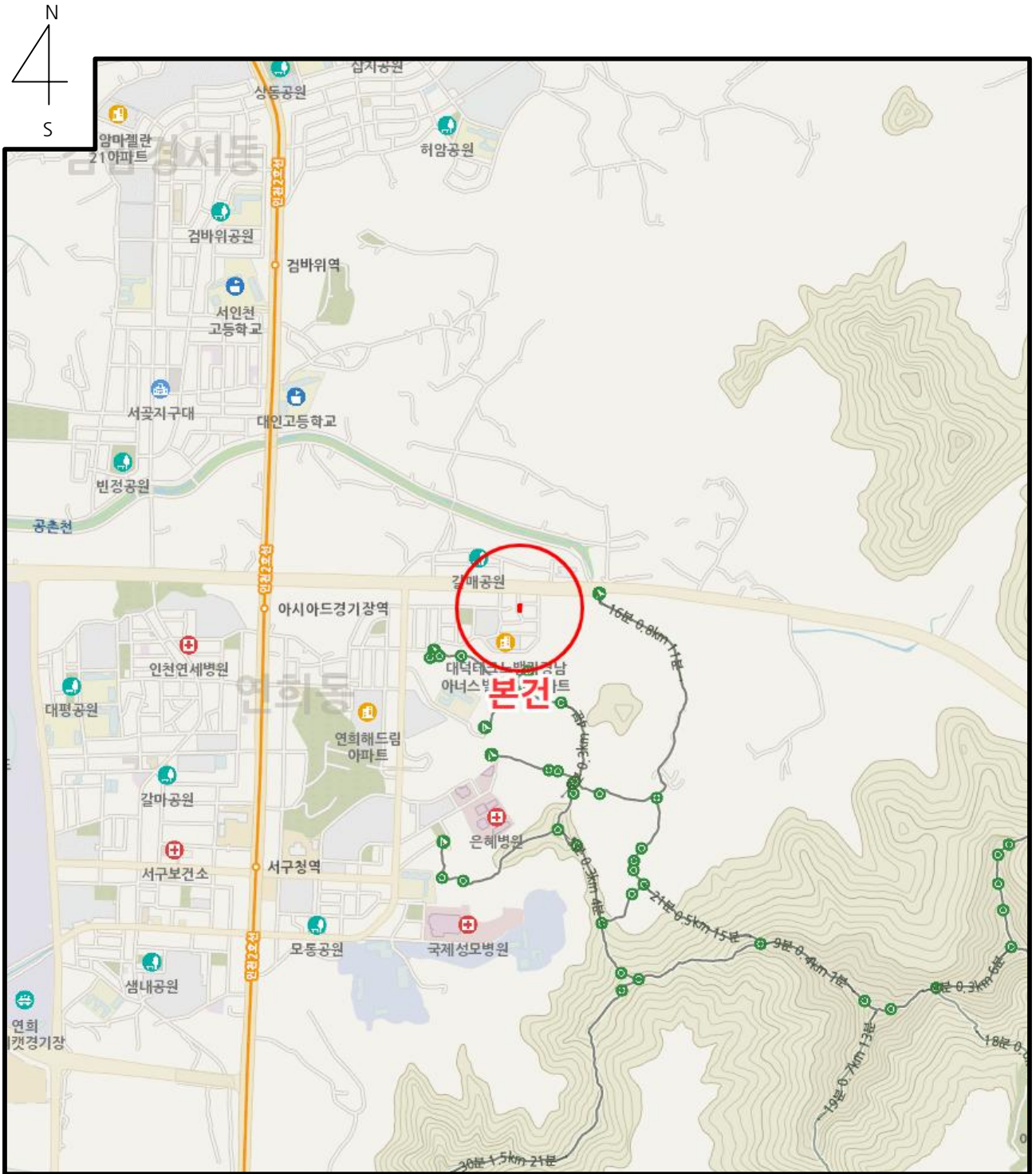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감정평가액(원)	비 고
					공 부	사 정		
(1) 1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7-16 아주하이빌 제101동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698-7			지층	103.48			
				1층	103.48			
				2층	110.58			
				3층	110.58			
				4층	88.20			
	동소	307-16	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	189.2			
				(내) 철근콘크리트조 제4층 제401호	39.73	39.73	104,000,000	비준가액 공용부분 포함
				(1)소유권 -----	16.225	16.225		
				대지권	189.2			
합 계							₩104,000,000	
이 하					여 백			

토지 · 건물 배분내역
 토지 : 62,400,000
 건물 : 41,600,000

광역위치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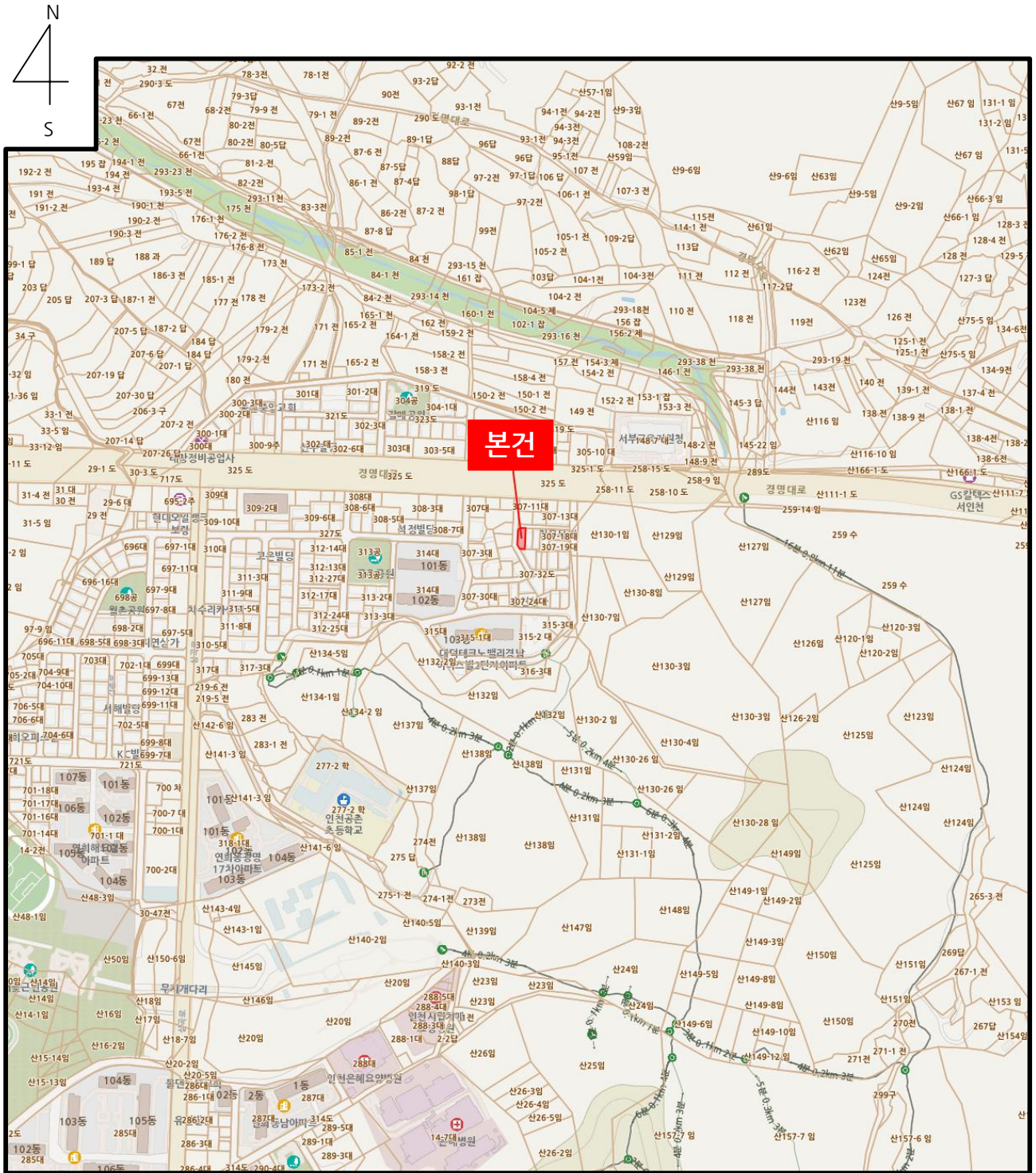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7-16 아주하이빌 제101동 제4층 제4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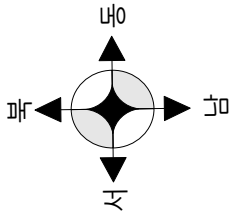
위치도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7-16 아주하이빌 제101동 제4층 제4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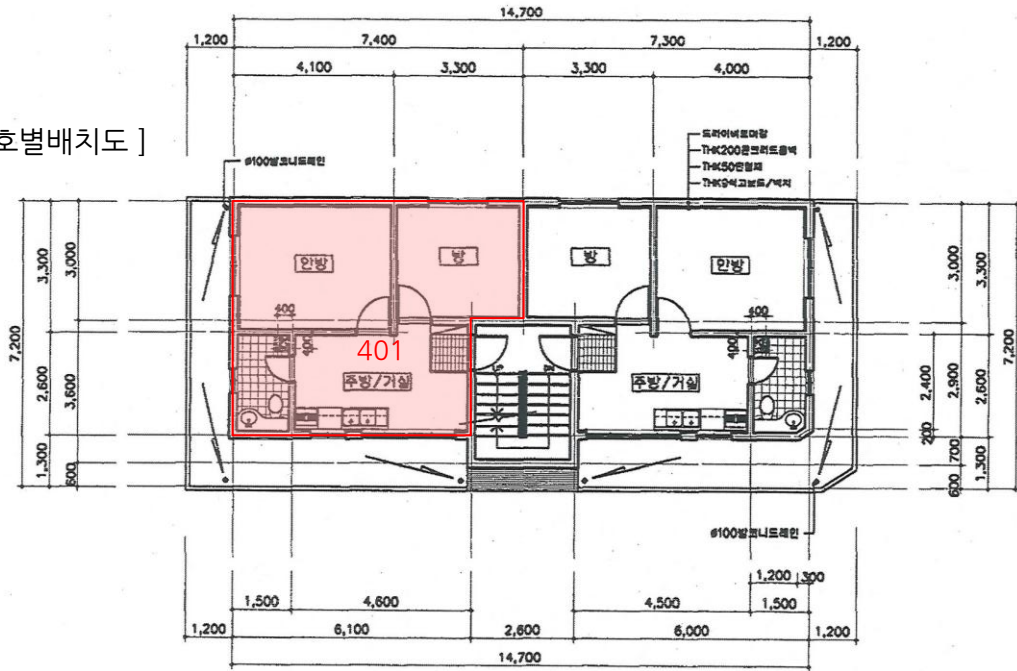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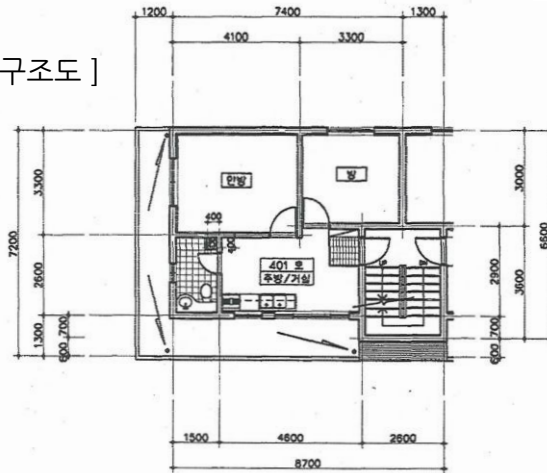


아주하이빌 제101동 제4층 제4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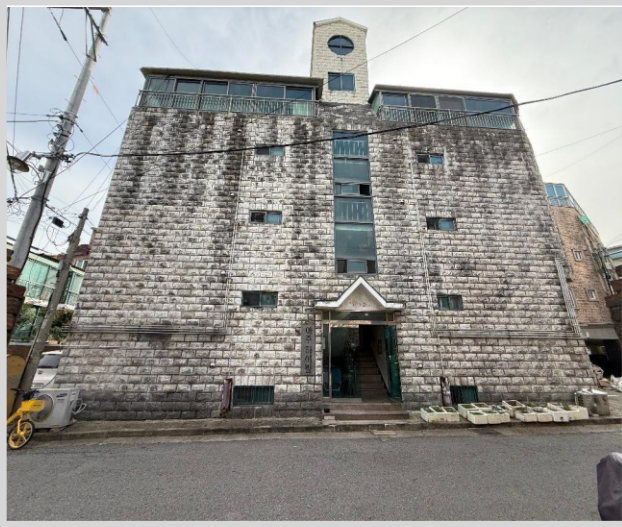
[호별배치도]



[내부구조도]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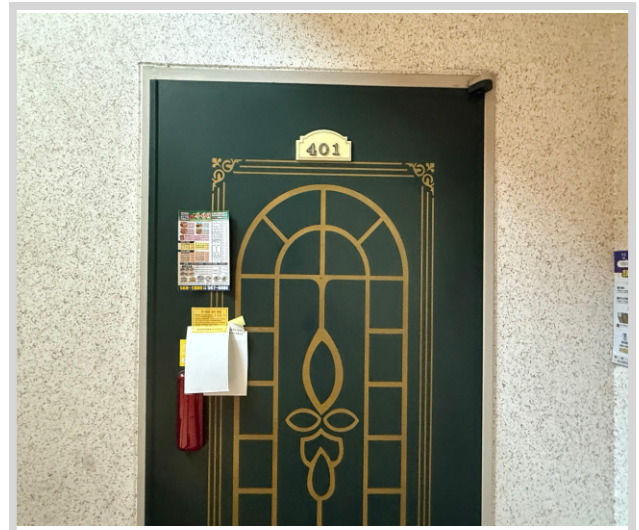
본건 소재건물 전경



본건 주위환경



본건 주위환경



본건 현관문

(주)가람감정평가법인

우)2106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1062 하이베라스 C동 908~911호
E-Mail: karam05@kapaland.co.kr 홈페이지: http://kaaram.com/

TEL: 032)547-1551
FAX: 032)547-1550

문서번호 0425-09-20103
시행일자 2025.10.02
수 신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상규
참 조 경매8계장
제 목 감정평가의뢰에 대한 회보

1. 우리 (주)가람감정평가법인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귀 법원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09.19 일자 귀 제 『2025타경512326』호로 의뢰하신 『장광일 소유물건(2025타경512326)』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3. 우리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 16조의 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로서 2011년부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을 폐지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오니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팩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미요청시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행되며 추후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첨 부 1. 감 정 평 가 서 2 부
2. 청 구 서 1 부 끝.

(주)가람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장

수수료 청구서

감정서번호: 가람 0425-09-20103

2025.10.02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상규 귀하

사십오만칠천육백원정(₩457,600.-)

2025.09.19일자 귀 제『2025타경512326』호로 우리 법인에 의뢰하신『장광일 소유물건(2025타경512326)』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내역-

과목	금액	비고
감정평가수수료	₩290,000	기본수수료 = 290,000
실비	여비	110,0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	10,000
	공부발급비	2,300
	기타실비	4,000
	자료수집비	-
	소계	126,300
특별용역비	-	
공급가액	416,000	1,000원 미만 절사
부가세	41,600	
합계	457,600	
기납부착수금	0	
정산청구액	₩457,600	

■ 송금처

신한은행 (100-022-531414) 예금주: (주)가람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 수수료 입금 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 번호 0425-09-20103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16조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이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는 거래처는 입금 후 바로 전화 주십시오. 연락이 안 될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겠습니다.

(주)가람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장

TEL: 032-547-1551 FAX: 032-547-1550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131-85-24832